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조치결과보고

〔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리모델링 공사〕

- 점검일시 : 2018.07.02 (월)
- 조치결과
- ◆ 점검자 : 정진혁, 박수엽

지적내용	점검사진	조치일자	조치사진
		조치내용	
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공사용 가설통로로 사용중인 기존 계단의 난간이 부분적으로 해체되어 안전난간으로 사용중이나 규칙에서 제시하는 100kg이상을 견딜 수 없는 상태이므로 보수/보강요망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</p>		2018.07.06	
		<p>현장여건에 맞춰 수직강관을 세워 난간을 견고하게 고정시킴</p>	
<p>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</p> <p>- 건물내부 층별 덕트 개구부는 낙하 및 근로자들의 전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등을 설치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조치)</p>		2018.07.06	
		<p>덮개설치 완료 및 작업자 실시</p>	
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건물외부에 설치된 가설비계와 건물사이의 틈새구간은 안전방망을 설치하여 관리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</p>		2018.07.05	
		<p>안전방망 설치 완료</p>	

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6층 파라펫에서 외벽 작업비계로 이동하는 통로 가설계단 상단에 안전난간이 없어 전도될 경우 추락사고의 위험이 매우 큰 상태이고,</p> <p>- 가설계단을 통해 내려가는 외벽비계에는 추락 위험이 큰 개구부가 발생되어 있으므로 상승/하강시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후 작업자 사용요망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,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, 제56조(작업발판의 구조)</p>		<p>2018.07.06</p> <p>가설계단 안전난간 설치 완료, 개구부 보완, 작업자 안전시설물 안전교육 실시</p>	
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5층 파라펫 외벽 작업비계에는 현재 여러개소에 단부처리가 미흡하여 작업시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태이므로 작업비계에서 하는 공종 시작전까지 조속히 단부 폐합 등으로 조치요망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,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</p>		<p>2018.07.06</p> <p>외부 비계 단부 폐합 완료</p>	

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4층 내벽 공사용 이동식비계의 작업발판 1개소가 발판 폭이 작은 것을 사용하여 안전난간과의 이격거리가 10cm이상 발생한 상태로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난간과의 이격거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발판으로 조치 후 작업요망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(작업발판의 구조)</p>		<p>2018.07.06</p> <p>안전발판 교체 및 작업자 이동식비계 안전발판 규정 교육 실시</p>	
<p>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</p> <p>- 현장에 설치된 가설사무실은 내부에 소화기를 배치하고 유사시 사용토록 관리바람.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41(가설사무실)</p>		<p>2018.07.06</p> <p>현장 가설 사무실 소화기 배치 완료 및 점검표 확인</p>	
<p>○ 감전재해 예방</p> <p>- 현장에서 사용중인 가설전선 중 가정용 전선 및 멀티탭은 현장에서 반출하고 콘센트 보호 Case가 손상된 것은 보완 후 사용바람.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17(가설전선)</p>		<p>2018.07.06</p> <p>가정용 전선 및 멀티탭 반출 완료 작업자 전선 관련 안전 주의조치 실시</p>	

<p>○ 기타 안전관리</p> <p>- 지상3층 전단벽 보강 공사구간은 철근 및 거푸집 연결부속이 튀어나와 있어 찰림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주변에 안전시설로 구역을 정하고 관계자 외 출입 금지토록 관리바람.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</p>		<p>2018.07.06</p> <p>안전 테이프 설치 작업자 외 출입통제 교육 실시</p>	
<p>○ 기타 안전관리</p> <p>- 현장에 사용중인 투광등은 등보호 및 습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내열강화 유리를 사용하고 보호망을 설치하여 관리요망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0(투광등)</p>		<p>2018.07.06</p> <p>내열강화 유리 설치 완료</p>	